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방 송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급변하는 방송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 정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장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방송사업의 소유·경영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품 판로 다양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채널 운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유 및 경영 규제 완화(안 제4조)

- 1)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을 폐지
- 2)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범위를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확대
-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을 폐지
- 4)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을 폐지
- 5)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 범위를 매출액의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49로 확대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주전송장치 설치장소의 변경에 대한 변경허가를 폐지(안 제15조제1호)

다.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 방송

채널사용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안 제16조)

라.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 채널 구성과 운용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고,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과 운용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채널 구성과 운용의 자율성을 제고(안 제53조)

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의무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의무를 폐지(안 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2항)

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에서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확대(안 제55조제3항·제4항 및 제5항)

-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간 재송신을 전체 지역채널 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허용
- 2) 해당 방송구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등이 생산한 상품의 소개 또는 판매 방송프로그램을 1일 3시간 이내에서 방송할 수 있도록 함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100분의 33을” “100분의 49를”로 한다.

⑥ 법 제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란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을 전체 사업자수의 100분의 5를 겸영(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경영”이라 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상파 방송구역의 변경을 초래하는 주전송장치의 변경

제16조제1항 중 “5년”을 “7년”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같은 호에 나목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같은 호 다목 중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에 관한 사항은 양방향 방식의 디지털방송 서비스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전체 운용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을 제외한다)의 수를 100개 이상으로 할 것

나. 동일한 방송내용물로 편성된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은 1개 채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디지털 기술방식이 다른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채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채널을 제외한다.

제53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나목·다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마목 중 “텔레비전방송채널”을 “실시간 텔레비전방송채널”로, “텔레비전방송채널 수의 100분의 20을 초과(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를 “실시간 텔레비전방송채널(외국방송 재송신 채널을 제외한다) 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가. 직접 사용하는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을 제외한다)과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의 합이 전체 운용 실시간 텔레비전방송채널(외국방송 재송신 채널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라.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그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실시간 텔레비전방송채널의 수가 전체 운용 실시간 텔레비전방송채널(외국방송 재송신 채널을 제외한다) 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제53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중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를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직접사용 채널운용계획서를 제출”을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제4항 중 “방송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를 “방송사업 허가 소관사무 관장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일정 번호 이상의 대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널번호 방식으로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모아보기 서비스 채널 등을 자유롭게 구성·운용할 수 있다.

제5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직선거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경력방송과 같은 법 제82조부터 제82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관련 방송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6.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활동 및 정보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및 정보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7.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생산한 상품을 소개 또는 판매하기 위해 기획·제작한 방송프로그램

④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제작한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지역채널 전체 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30이내에서 재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시간 및 횟수(중계송신 방송시간 및 횟수를 포함한다)는 주시청시간대를 제외한 시간대에서 1일 총 3시간 안에서 3회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은 제50조·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산정과 제59조의 방송광고 시간·횟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청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제3항제7

호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과 관련하여 종합유선 방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조건 및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단위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규정,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소유제한의 범위 등) ① ~ ④ (생 락)	제4조(소유제한의 범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 ----- ----- -----.
1. (생 락)	1. (현행과 같음)
2. <u>지상파방송사업자가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u>	<삭 제>
4. <u>지상파방송사업자가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u>	<삭 제>
5. <u>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u>	<삭 제>
⑥ 법 제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란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을 전체 사업자수의

1.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및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각각 전체 사업자수의 100분의 3(100분의 3으로 산정한 사업자수가 6개 미만인 경우에는 6개로 한다)을 초과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2.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및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각각 전체 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⑦ 법 제8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

100분의 5를 겸영(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경영”이라 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삭 제>

<삭 제>

⑦ -----

과”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5. 특정 위성방송사업자가 다른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
여 소유하는 경우

6. 특정 위성방송사업자가 다른
위성방송사업자의 위성방송사
업을 2개 이상 경영하는 경우

⑧ 법 제8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특정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과 당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을 합한 매출액이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총액 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3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은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⑨ (생략)

_____.

1.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⑧ -----

-----100분의 49를

-----.

⑨ (현행과 같음)

제15조(변경허가 등)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방송구역의 변경을 초래하는 주전송장치의 변경(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전송장치 설치장소의 이전을 포함한다)

2. (생략)

제16조(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② ~ ⑦ (생략)

제53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①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제15조(변경허가 등) -----

-----.

1. 지상파 방송구역의 변경을 초래하는 주전송장치의 변경

2. (현행과 같음)

제16조(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등) ① -----

7년-----.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3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① -

다음 각 호의 사업자별로 각 목
의 사항을 준수하여 채널을 구
성·운용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생략)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
위성방송사업자
- 가. 전체운용 텔레비전방송 채널의 수를 70개 이상으로 할 것

<신설>

- 다.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
아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의 채널을 2개 이상 포함할

-----.

이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에 관한 사항은
양방향 방식의 디지털방송 서비
스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현행과 같음)
 2. -----

- 가. 전체 운용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을 제외한다)의 수를 100
개 이상으로 할 것

나. 동일한 방송내용물로 편성된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은
1개 채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디지털 기술방식이
다른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채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정하는 채널을 제외한다.

- 다. -----

----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자 -----

것

3.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가. 텔레비전방송채널·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을 포함할 것

나. 전체 운용채널 수를 15개 이상으로 할 것

다. 전체 운용 텔레비전방송채널의 수가 전체 운용 채널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채널을 1개 이상 포함할 것

② 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사업자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의 수가 3개 채널(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

<삭 제>

② -----

-----.

1. (현행과 같음)

2. -----

가. 직접 사용하는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을 제외한

의한 지역채널을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전체 운
용채널수가 10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다.

나. 위성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
하는 채널의 수가 운용하는 텔
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
송채널별로 각각 그 채널 수의
100분의 10(운용하는 텔레비전
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
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1개 채널, 10개 이상 40개 미만
인 경우에는 각각 4개 채널)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데이터
방송채널의 100분의 30(운용하
는 데이터방송채널이 3개 이하
인 경우에는 1개 채널)을 초과
하는 경우

다.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
널의 수가 운용하는 텔레비전
방송채널수의 100분의 20(운용
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이 5개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채널)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라디오

다)과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
는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
의 합이 전체 운용 실시간
텔레비전방송채널(외국방송
재송신 채널을 제외한다)의 1
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삭 제>

<삭 제>

방송채널수의 100분의 50(위성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
하거나, 운용하는 데이터방송
채널수의 100분의 30을 초과
(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이 3
개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하
는 경우

라.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그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가 운용하는 텔레비
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20(운
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이 5
개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채널)
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라디
오방송채널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데이터
방송채널수의 100분의 30을 초
과(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이
3개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하는 경우

마.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지상파
방송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
업자에게 임대하는 텔레비전방
송채널(교육, 종교 또는 지역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채널

라.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그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실시간 텔레비전방송채널의
수가 전체 운용 실시간 텔레
비전방송채널(외국방송 재송신
채널을 제외한다) 수의 100분
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마. -----

----- 실
시간 텔레비전방송채널 ----

및 지상파방송이 재송신되는 채널은 제외한다)수의 합계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수의 100분의 20을 초과(위성이 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바.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종합

유선방송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합계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35를 초과(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은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채널단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의 해당 채널

(2)동일인이 운용하는 채널로서 동일한 방송분야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여러 채널을 통하여 방송하는 채널

(3)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

----- 실시간 텔레비전방송채널(외국방송 재송신 채널을 제외한다) 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삭 제>

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채널

(4)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
문편성을 행하는 채널

③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
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직접 사용하는 채널
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직접사용채널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종합
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
업자

2.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이동
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운용채널수의 계산방법은 방
송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3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
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③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
업자 -----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서를 방송
통신위원회에 제출-----

-----.

<삭 제>

<삭 제>

④ -----

-----방

송사업 허가 소관 사무 관장의

구분에 따라-----

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

제55조(지역채널의 운용) ① (생략)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채널을 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채널 운용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고, 지역채널운용계획서에 따라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지역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4. (생략)

<신설>

방송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일정 번호 이상의 대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널번호 방식으로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모아보기 서비스 채널 등을 자유롭게 구성·운용할 수 있다.

제55조(지역채널의 운용)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③ -----

-----.

1.~4. (현행과 같음)

5. 「공직선거법」 제71조부터 제7

<신 설>

<신 설>

5. 기타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방송프로그램

<신 설>

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경력방송과 같은
법 제82조부터 제82조의3 까지
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관
련 방송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6.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을 포함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활동 및 정보와 지
방의회의 의정활동 및 정보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7.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
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
역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
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 등이 생산한 상품
을 소개 또는 판매하기 위해 기
획·제작한 방송프로그램

8. (현행 제5호와 같음)

④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제작한 제3항

<신 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지역채널 전체 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30이내에서 재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시간 및 횟수(재송신 방송시간 및 횟수를 포함한다)는 주시청시간대를 제외한 시간대에서 1일 총 3시간 안에서 3회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은 제50조·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산정과 제59조의 방송광고 시간·횟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청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과 관련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조건 및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1
항 및 제5항의 개정 규정은 공
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인터
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
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
공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프로
그램의 단위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3
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
호 각 목의 규정, 같은 조 제3
항·제4항 및 제54조를 준용한
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연 락 처	(044) 202-6546